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u>법 제119조제2항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처분”이란</u>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u>법 제119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란</u>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법 조문과 일치</p>
<p>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 각 호의-----

<삭 제>

○ 관세청장의 직권시정 요구로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

2.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3.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⑤ (생략)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를-----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해 회의장 출입 및 의견진술 가능하도록 함

⑤ (생략)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 147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47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 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 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

②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
관-----관세·법률·재정에 관한-----

-----22명을-----

○ 개정 관세법 시행령('23. 7. 1. 시행 예정) 반영

○ 위촉 제한 규정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③·④ (생략)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47조제8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관세심사위원

○ 개정 관세법('23. 7. 1. 시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

⑧ (생략)

<신설>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선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현행과 같음)

⑨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관세심사위원회 또한 같다.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제119조에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는 행위 금지

○ '23. 7. 1. 시행 예정인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수당 지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복방법 안내

○ 개정 관세법 시행령('23. 7. 1. 시행 예정) 반영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결정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법률·재정에 관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위촉 제한 규정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 개정 관세법('23. 7. 1. 시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
-----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 개정 관세법('23. 7. 1. 시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 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신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의 통지(서식)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2 서식으로 청구인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
게 -----

[별표 1]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제25조제6항 관련)

김포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동해, 성남, 과주
김해,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수원, 안산, 평택직할세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별표 2] 본부세관별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제25조제7항 관련)

본부세관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인천공항본부	김포
서울본부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동해, 성남, 과주
부산본부	김해,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인천본부	수원, 안산, 평택직할세관
대구본부	울산, 구미, 포항
광주본부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문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청 구 대 상	처 분 청	세관장	처분유형	[]고지처분 []경정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을 한 날	20 년 월 일(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불 복 의 이 유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

「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위 임 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관세·법무법인명	성명	구 분	[]관세사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 불복방법 통지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귀하가 20 년 월 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법 132조 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결정기간이 경과한 20 년 월 일부터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OO세관장 직인

공지사항

※ 본 통지는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의 청구가 각하되었거나 앞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청구대상	처 분 청	세관장	처분유형	[]고지처분 []경정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	-----------------------------------

불 복 의 이 유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

「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세관장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관세·법무법인명	성명	구 분	[]관세사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이의	호
청구인	주 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위대리인	주 소 :	
	성 명 :	
처분청	세관장	

위 당사자간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있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이유 : 붙임(사실,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쟁점 및 판단을 기재할 것)

20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공지사항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신동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청구대상	통지서 번호		통지세관	세관장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과세전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	--------------------------------

불복의이유	<p>*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p> <p>*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p>
-------	--

「관세법」 제118조제2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관세청장)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관세·법무법인명	성명	구분 []관세사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결정지연 통지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귀하가 20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도래 등으로 세관장의 경정·고지처분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공지사항

※ 본 통지는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의 청구가 각하되었거나 앞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	처리기간 즉시																					
<p>※ 위임받은 법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지정서 작성·제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 <h3 style="text-align: center;">담당 관세사·변호사 지정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20%;">사건번호</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20%;">청구인</td> <td style="width: 3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불복대리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불복대리 지정자</td> <td colspan="3" style="padding-left: 20px;">아래 대리인 중 대표대리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input type="checkbox"/> 관세사 ○○○</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대전화</td> <td style="padding-left: 20px;">이메일</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input type="checkbox"/> 관세사 ○○○</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대전화</td> <td style="padding-left: 20px;">이메일</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input type="checkbox"/> 변호사 ○○○</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대전화</td> <td style="padding-left: 20px;">이메일</td> </tr> <tr> <td></td> <td style="padding-left: 20px;"><input type="checkbox"/> 변호사 ○○○</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대전화</td> <td style="padding-left: 20px;">이메일</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불복진행상황안내, 사전열람자료 등은 대표로 지정된 대리인에게만 발송되니, 대표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관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p> </div>		사건번호		청구인		불복대리 지정자	아래 대리인 중 대표대리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사건번호		청구인																				
불복대리 지정자	아래 대리인 중 대표대리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p>○○○관세·법무법인 (직인) 대표자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관세심사위원회 귀중</p>																						

0000년 제0회 관세심사위원회 사전진단서

회의 개요 : 0000년 제0회 관세심사위원회

안건 당사자

안건번호	청 구 인	대 리 인

진단내용을 확인하여 체크사항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법시행령] 제144조의4제7항제2호 : 위원 회피사항

연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예	아니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